

모델 35

완전생산기준 활용 모델

01 | 개요

-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원산지 입증 모델

- ① 농산물 출하확인서, 조합원확인서류, 수산물수매확인서, 어촌계장확인서 등
- ② 농지원부, 경작증명서, 선박국적증서, 어업허가증, 원양어획반입신고서 등

- 일반적으로 ①거래단계에서 발행되고 있거나 ②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으로 완전생산 및 획득사실 입증(해당서류로 원산지확인서 대체)
-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

02 | 비즈니스 모델

- 원산지확인서 대체가능 서류로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입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1차생산품의 FTA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
 -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농수축산물 등 1차 생산제품이 많으며, 대부분 생산자가 농어민으로 원산지확인서 구비에 어려움이 있음
 - * (예시) 수산물인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초생산자(선주)가 바다에 있어 원산지확인서 징구가 어렵고,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
 - 또한 공산품과는 달리 당해물품의 재배, 채취, 어로 등 생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서류가 없고, 서류 확보 또한 어려움



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농수축산물 생산 업체 및 1차 생산제품 가공 수출업체